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-2164호

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·2차 독촉,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제109조 및 「이륜자동차검사규칙」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(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),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1. **제　　목** :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·2차 독촉,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** : 2026. 11. 02. ~ 2026. 11. 20. (18일간)
3. **공고대상** : 붙임내역 참조
4. **문　　의** : 인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이륜차검사담당 (☎ 032-560-4882)
5. **공시송달 내용**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,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11월 2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